

총회 공천업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회 공천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천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천업무)

1. 공천업무는 지역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 규정을 살피 공천한다.
2. 공천 업무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 수를 참작하여 공천한다.
3. 정기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안전심의부 부원
 - 2) 총회 사업부서 및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
 - 3)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임시위원
 - 4) 총회가 공천 위임한 기타 위원

제3조 (공천 자격)

1. 총회의 위원 공천 대상은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분야에는 목사, 장로가 아니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대원이 아니어도 공천될 수 있다. 단, 무임목사는 공천에서 제외된다.

제4조 (공천 기준)

1. 총회 상임위원회 및 대외연합기관 위원 공천은 1회 연임까지 가능하고, 3선일 경우에는 공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공천할 수 있다. 단 노회에서 1인씩 공천하는 헌법위원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동일 위원회 내의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과 위원회 추천위원의 근속기간은 연임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 추천위원 공천은 총회 전에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천위원회에 공천을 요청한다.
4. 위원회 추천위원은 총회 공천업무 법규에 의거 추천한다.
5. 위원회 추천위원 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6. 공천은 대내, 대외 1인 1부서 원칙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위원회

는 겸직하여 적임자를 공천할 수 있다.

- 1) 헌법위원회
 - 2) 재판국
 - 3) 선거관리위원회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7. 한신학원 이사회의 이사 공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신학원 이사 공천은 후보자의 이력서를 받고 공천한다.
 - 2) 한신학원 이사는 이사회 추천이사, 개방형 추천이사를 포함하여 1노회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공천 배제사항)

1. 일방적 수혜자와 규정에 있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위원회 및 이사회 공천을 배제한다.
2.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역자와 교회(장로)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단 교역자가 께석인 교회의 장로는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내지 않아도 공천될 수 있다.

제6조 (공천 결원 · 보선사항)

1. 대내외 위원 및 이사가 사임하거나 정년이 되었을 경우 사임 처리하고 보선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명시하여 후임자를 공천한다.
2. 총회 상임위원회 위원 중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을 변경할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사임서를 받아야 하며 해 노회의 공천위원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잔여 임기 동안 공천될 경우 초선에 해당되며 재공천될 경우 연임에 해당된다.

제7조 (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결의 및 공천위원회 결의로 정한 공천 기준에 따른다.

제8조 (개정)

본 시행세칙 개정은 공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시행)

본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